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중견기업이 선도합니다.

2019년

중견기업 범위해설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중견기업이 선도합니다.

2019년

중견기업 범위해설



이 책자는 2019년 9월 현재 적용되는 중견기업 기준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중견기업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견기업 기준 적용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2019 중견기업 범위해설

I 중견기업이란?

1. 중견기업 범위	3
2. 중견기업 규모 기준	9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	9
② 상한 기준(자산총액 5천억 이상)	13
3. 중견기업 독립성 기준	20
①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21
②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27
4. 중견기업 제외대상	46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46
②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50
③ 공공기관	62
④ 지방공기업	66

II 중견기업 확인

1. 중견기업 확인제도 안내	79
① 확인개요	79
② 확인절차	80
③ 제출서류 안내	81
④ 유효기간	83
⑤ 관련문의	83

2. 특례대상 중견기업	90
3.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94
① 중소기업 유예기간	94
② 경과조치	95

Ⅲ 중견기업 후보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105
-------------	-----

참고자료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111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6
▶ 중견기업 확인요령	144

중소·중견·대기업 비교(요약)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규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규모기준 충족 <p style="text-align: center;">A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규모기준 초과 (금융업 및 보험업 제외) <p style="text-align: center;">O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독립성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좌동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②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닐 것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닐 것 (지배기업으로 비영리법인 포함)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하는 기업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확인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지정 및 통지(공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기업집단포털 (www.eroup.go.kr)
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mss.go.kr)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견기업이란?

1. 중견기업 범위
2. 중견기업 규모 기준
3. 중견기업 독립성 기준
4. 중견기업 제외대상





I.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견기업 범위

- 2011년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4.1월)하여 중견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중견기업 범위 및 기준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2017년 결산 기준으로 4,468개입니다. 이는 전체 기업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종사자의 13.5%가 일하고 있습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상 중견기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③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 ⑥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 ⑦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일반지주회사 제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Tip 예시 :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음식점업, 사설학원, 개인병원 등)
 「상법」에 따라 설립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등
 영농조합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2.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Tip 예시 : 비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 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 등

■ 반대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구성원에게 분배(배당)할 수 있으면 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신용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대한염업조합은 이익 배당이 가능하지만 비영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견기업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본 해설 후반부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적용 1 A기업은 사장 1명이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네

☞ 건설업은 '평균매출액 1000억원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도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적용 2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중견기업이 될 수 없나요? ☞ 아니오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입니다. 따라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600억원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적용 3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종교단체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동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적용 4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이익을 배당하는 등 영리성을 일부 갖추고 있으나, 설립 근거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적용 5 사회복지법인은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1 지방공기업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아니오

☞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 공기업도 영리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었으나, 16.8.30일부터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나목 개정(16.5.29)으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 여부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2 특수목적회사(SPC*)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네

☞ 특수목적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회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규모기준이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설립)

사례3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아니오
또한, 단위농협이 도정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단위농협이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으로서 도정공장을 설립할 경우, 그 도정공장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공장을 단위농협 내의 사업 부서로 운영한다면 해당 공장은 단위농협과 별개의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4 지주회사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네

☞ 지주회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며,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로 구분됩니다. 지주회사의 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 및 보험업(K)에 해당합니다.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면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 지주회사(비금융지주회사)는 중견기업의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5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등”이라 함)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영농조합법인 등은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초과하면 중견기업입니다.

사례6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학교기업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아니오

☞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학교기업)에 따라 운영되며,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며,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7 외국법인은 중견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8 A법인이 본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과 개별 사업장은 각각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은 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점, 영업점 등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이므로, A법인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9 중견기업 범위기준은 모든 법령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 아니요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범위를 타 법령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법령에서는 그 법에 맞게 중견기업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특례제한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세부기준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중견기업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이상 등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원내용이 어느 법령을 준용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10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요

☞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을 받지 않았지만 법적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견기업 지원사업 및 정책금융 등 중견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중견기업 규모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견기업 기준에 부합하거나 업종에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 업종별 규모기준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산업분류(대분류 또는 중분류) 기준으로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Tip** 1.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업종별 규모기준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주의로 운영하였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3년 평균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업종별 규모기준의 택일주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상시근로자수 1천명, 자기 자본 1천억 원, 자산총액 5천억원, 3년 평균 매출액 1천5백억원 등 네 가지 상한기준은 자산총액 5천억원 기준만 존치하고 폐지하였습니다.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

- Tip**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준용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초과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초과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초과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초과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초과로 한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해당 업종을 포함하는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로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모기향을 만드는 기업의 주된 업종을 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http://kssc.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모기향'으로 검색하면, 분류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분류기호 20411)의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분류기호 중앙에 두 자리(20)가 중분류 코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제조업 코드 'C'를 앞에 붙여 분류기호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이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이 됩니다.

Tip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코드체계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순입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대분류 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생산활동(대분류 T)', '국제 및 외국기관(대분류 U)'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세세분류 업종이 [별표1]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세세분류를 포함하는 대분류(제조업의 경우 중분류)를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합니다.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큰 기업의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간주합니다.

Tip

1. 주된 업종의 판단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나, [별표1]을 적용할 때는 주된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된 업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 2012년 이전에는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규모기준이 낮게 설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관계기업의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주된 업종 기준을 달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주된 업종이 결정되면, 해당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사업기간 별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매출액등의 산출방법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Tip** 1. '평균매출액'이 아닌 '평균매출액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년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지만, 3개 사업연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등"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2. 2015년 이전에 적용되었던 상한기준 중에 하나인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에서의 3년 평균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며, 개정 법령에서의 업종별 규모기준인 '평균매출액등'의 계산방법과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산출방법에서 언급한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의미하는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 또한, 신설·분할기업과 같이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상한 기준(자산총액 5천억 이상)

- 기업의 매출이 성장하여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 초과시 중견기업이며, 자산총액 5천억 이상 기업 또한 중견기업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Tip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하였습니다.

- 자산총액(계)은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자본총계+부채총계)를 말하며,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있는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분할·합병한 기업	창업일·합병일·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

관련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 8.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2018. 3. 27.>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대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 가. 금융업
- 나. 보험 및 연금업
-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8. 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대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대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전문개정 2011. 12. 28.]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 4. 14.>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 4. 14.>

[전문개정 2011. 12. 28.]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2015. 6. 30.>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

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4. 4. 14.]

제7조의2(자산총액)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개정 2014. 4. 14.>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4. 14.>

[본조신설 2011. 12. 28.]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4로 이동 <2011. 12. 28.>]

적용 사례

적용 1 A기업은 음료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3년 평균 매출액은 900억원입니다. 평균매출액이 음료제조업 분야에서 500억원, 도매업 분야에서 400억원일 때 중견기업인가요? ☞ 네

☞ 음료제조업 분야의 매출액 비중이 크므로 A기업의 주업종은 음료제조업(분류기호 'C11')이며, 3년 평균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기준인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를 충족하므로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적용 2 A기업(12월 결산법인)이 2018년 2월 5일에 창업한 경우, 2019년 5월 15일에 평균매출액등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A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지만 창업한 지 12개월이 넘었으므로, 산정일이 속한 전 달(2019년 4월)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2018년 5월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연간매출액으로 보고 적용합니다.

적용 3 인력 파견업을 운영하는 A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1,500명이며, 3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인 경우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인력 파견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의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초과'입니다. 따라서 A기업은 규모기준이 충족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15년 개정된 규정은 해당 업종의 3개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시근로자는 기업규모 판단 지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4 2017년 5월에 대기업으로부터 분할한 S/W 개발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연도별 매출액이 2017년도 400억원, 2018년 850억원인 경우 2019년도 적용시점에서 중견기업인가요? ☞ 네

☞ S/W 개발업이 포함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입니다. 그러나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는 2018년도이며, A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은 850억원이므로 중견기업입니다.

3 중견기업 독립성 기준

- 기업이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영역을 다각화 할 경우 출자를 통해 별도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기업은 중소기업 규모라 하더라도 중견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Tip 독립성 기준은 주식 등의 출자관계로 인해 발생하므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만 적용합니다.

Tip 관계기업 제도의 적용 제외대상인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영리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독립성 기준을 모두 적용합니다.

- 현행 독립성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견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국내·외 법인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중견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단,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규모·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1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 구체적으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기업 단독 또는 (모)기업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견기업이 됩니다.

Tip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 주식회사 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으로서, 종전에 동 규정은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적용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상법상 회사(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등 모든 법인에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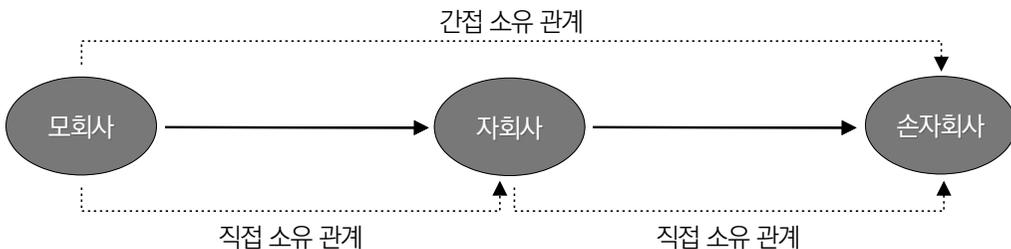
- 이 때, 최다출자자는 출자자 개개인을 따로 보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끼리도 합산하여 판단하는데, 법인주주의 경우 그 법인의 임원과 합산하고 개인은 개인의 친족과 합산하여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Tip 임원이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제외한 등기이사를 말하며, 이외의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를 의미합니다.

- 동 규정은 직접적인 소유관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직접 소유는 아래의 그림에서 모회사 - 자회사, 자회사 - 손자회사의 관계에 해당하며, 간접 소유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거쳐서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Tip 2016년 4월26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28일부터 지분관계 변동으로 인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법인은 중소기업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 산정방식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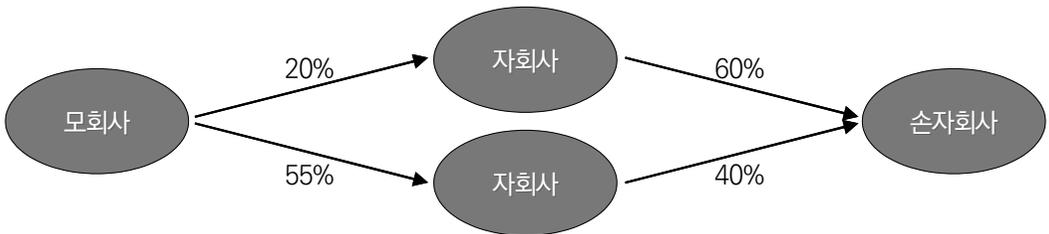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 비율이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60%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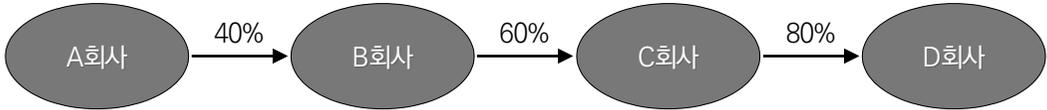
모회사가 자회사를 50% 미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비율과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비율을 곱한 값이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40\% \times 60\% = 24\%$

사례 3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한 비율이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20\% \times 60\%) + (100\% \times 40\%) = 52\%$

사례 4



간접소유는 각 단계별로 최대출자자 조건을 충족하면 소유관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며, 상위 단계부터 차례대로 계산 ⇒ **간접소유비율 : $(40\% \times 60\%) \times 80\% = 19.2\%$**

- 동 규정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모법인’이 국내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Tip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과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을 참조하여 기업 간의 지배 종속 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전문개정 2011. 12. 2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 제7조의2(자산총액)**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개정 2014. 4. 14.>
-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4. 14.>

[본조신설 2011. 12. 28.]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4로 이동 <2011. 12. 2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2.]

적용 사례

적용 1 2018년 6월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A기업이 중소기업 B의 지분을 40%이상 소유하게 된 경우, B기업은 중견기업인가요?

☞ 2016년 4월 28일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5천억원 이상 기업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한 피출자 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최초 지분관계만 적용됩니다.

적용 2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은 800억입니다. A기업의 주식을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인 B기업이 35%, C기업의 대표이사가 65% 소유한 경우 A사는 중견기업 인가요? ☞ 아니오

☞ B기업이 A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고 A기업이 해당업종(C17)의 매출액 기준(1,500억원)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C기업의 대표이사 B기업의 임원이라면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3 B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A기업이 29%, A기업의 임원이 40%를 소유한 경우, B기업은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은 1차적으로 모법인이 피출자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해야 적용합니다. 즉, 소유비율 30% 이상인지 여부는 기업이 소유한 비율로만 판단하고, 최다출자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만 임원이 소유한 비율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동 적용사례의 경우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29%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4 중소기업인 A기업(유한회사)의 지분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분 70%를 소유한 경우 A기업은 중견기업인가요? ☞ 네

☞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상법」상 모든 회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A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적용 5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3개년 평균매출액이 300억원입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비영리법인인 B기업이 A기업의 지분을 30%를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하나요? ☞ 아니오

☞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15.6.30.) 제3조2 나목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인 지분을 소유한 경우 지배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A의 경우 교육서비스업의 규모기준인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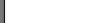
2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 관계기업 제도의 기본 개념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매출액을 주식 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여 중견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준용하여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말하며, 이 경우 지배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며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합니다.

Tip 외부감사대상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하지 않는 회사(자산총액 120억원 미만, 부채총액 70억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 주권상장법인(예정법인 포함) 등을 말합니다.

- 또한, 관계기업에 속하더라도 모두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업 간에 주식 등 소유 비율에 따라 합산한 매출액이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 관계기업 제도의 판단 및 적용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①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인가?



② 주식등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충족하는가?

① 지배·종속의 관계에 따른 관계기업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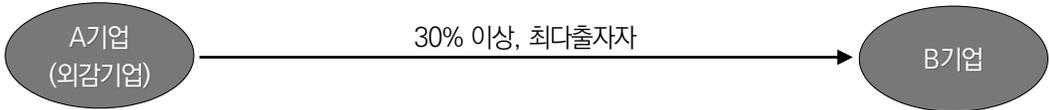
- 지배·종속 관계의 단순구조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입니다. 이 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주식등 소유비율이 30% 미만이거나 최다출자자가 아니더라도,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또는 자회사를 거쳐 주식등을 우회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지를 판단합니다.

- Tip** 1. 자회사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종속기업만을 의미합니다.
 2. 법령에서는 '특수관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등의 소유비율 계산 시 합산 대상이 되는 아래의 개인을 이 책에서는 특수관계자로 표현하였습니다.
 가.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위의 '가'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3. 2012년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이 지배기업이 되는 경우는 삭제되었으며, 지배기업은 외부감사대상 기업만 해당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배·종속의 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기준의 주식등 소유관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 소유관계의 변동사항은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 반영되지 않으며, 지배기업의 사업연도가 변경될 때에 반영됩니다.
- 다만, 2015년부터는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합병, 분할이 아닌 단순 지분변동은 기존과 같이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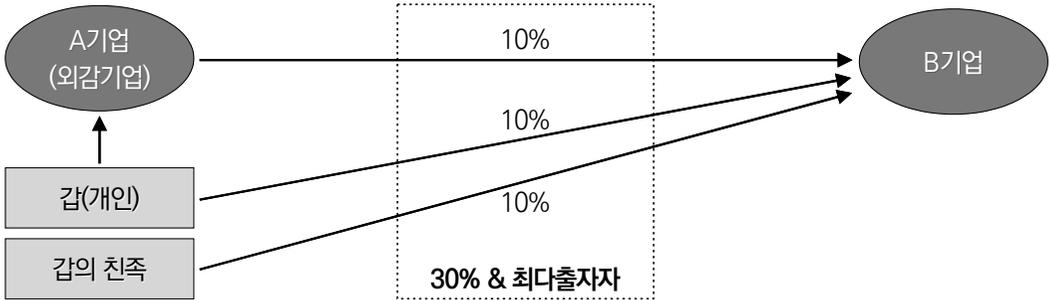
사례 1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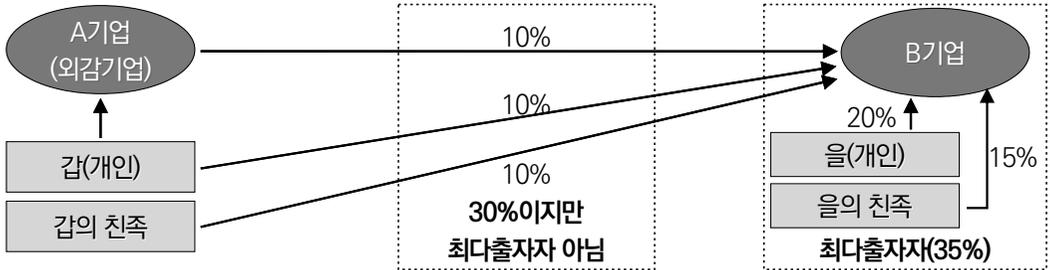


※ 감(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A기업이 특수관계자(감 및 감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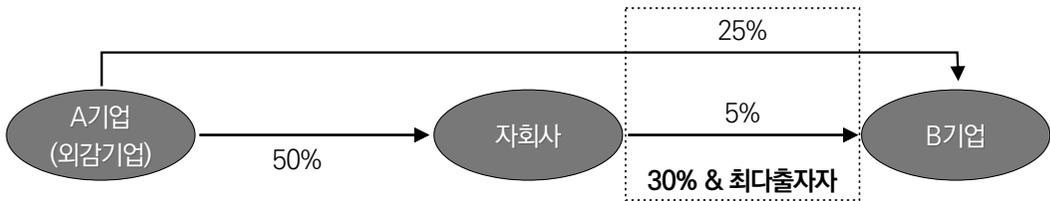
※ 갑(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 을(개인) 및 을의 친족 : A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A기업이 특수관계자(갑 및 갑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A기업과 관련이 없는 을과 을의 친족이 합산하여 B기업의 최다출자자이므로 A기업과 B기업은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Tip 지배·종속관계에 있어서 최다출자자 결정 시, 지배기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은 그 개인의 친족과 합산하여 판단. 또한 유형별로 최다출자자를 각각 판단하므로 다수의 지배기업 존재 가능

유형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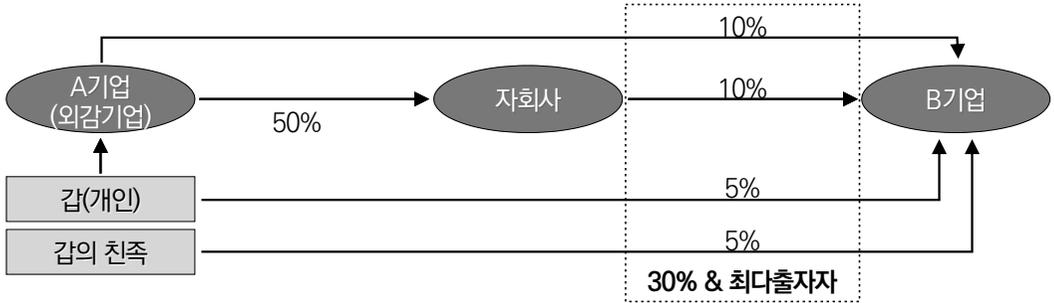
사례 1



※ 자회사 :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유형1]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유형에도 동일하게 적용)

A기업이 자회사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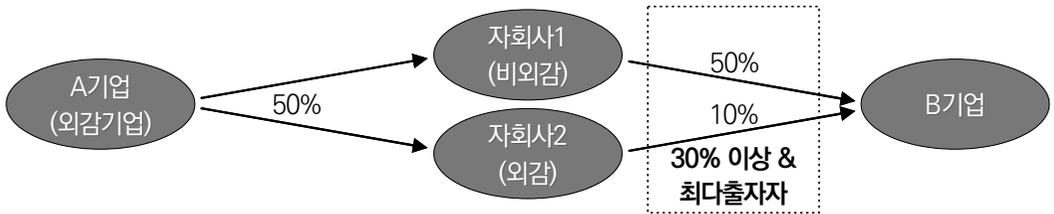
사례 2



A기업이 자회사 및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유형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 항제3호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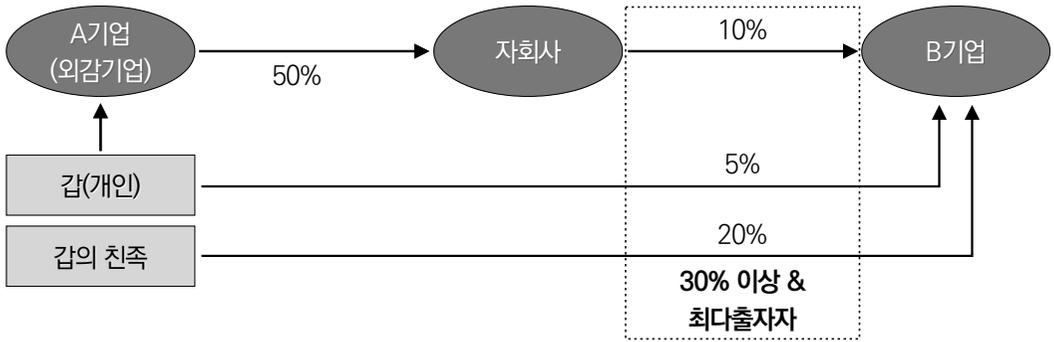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A기업의 자회사들이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의 종속기업(자회사1,2 및 B기업), B기업의 지배기업(A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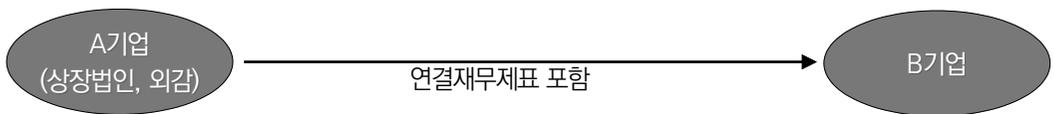
* '자회사1'이 B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지만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니므로 자회사1과 B기업은 관계기업이 성립하지 않음

유형 4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



A기업의 자회사 및 특수관계자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유형 5 지배기업이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 코스닥)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과 지배·종속관계 성립



기업 간 주식등의 관계가 앞의 유형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장법인인 A기업이 B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관련 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사항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

조제1항에 따른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 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제 1항에 따른다.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 바. 해산·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登記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2018. 10. 30.>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개인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4., 2017. 10. 17.>

1.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28., 2012. 1. 25., 2014. 4. 14., 2015. 6. 30., 2017. 7. 26.>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09. 3. 25.]

②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

-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여 관계기업이 되더라도 모두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는 방식과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 Tip** 1. 과거 관계기업 제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2014.1.1일부터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기업에 대해서 유예를 허용했으며, 2015.1.1일부터는 모든 관계기업에 대해서 유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제9조제4호 관련)
2. 2015년 이전에는 관계기업 간의 규모합산 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적용했으나, 2015.1.1일부터는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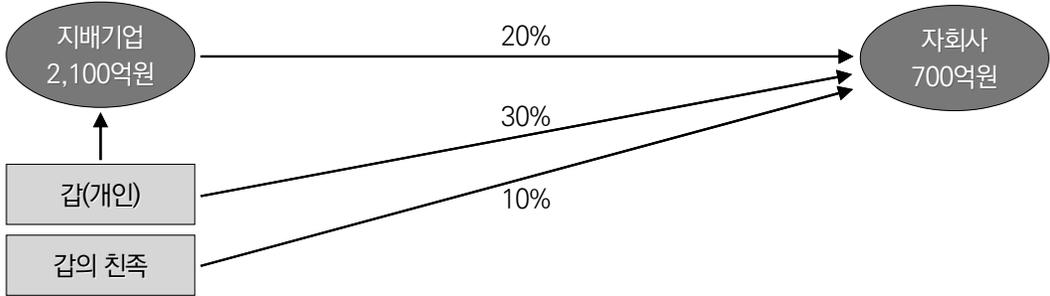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자회사 및 손자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경우
 - 실질적 지배(50% 이상 소유한 경우) : 100% 합산
 - 형식적 지배(50% 미만 소유한 경우) : 그 비율만큼 합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한 경우 :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소유 비율로 합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한 경우 : 지배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소유 비율과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로 합산

유형 1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2,100억원) + 자회사(700억원) = 2,800억원
- 자회사 : 자회사(700억원) + 지배기업(2,100억원) = 2,800억원

유형 2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2,100억원) + 자회사(700억원×20%) = 2,240억원
- 자회사 : 자회사(700억원) + 지배기업(2,100억원×20%) = 1,120억원
- ※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제외하고 기업의 소유비율만으로 산정

유형 3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하고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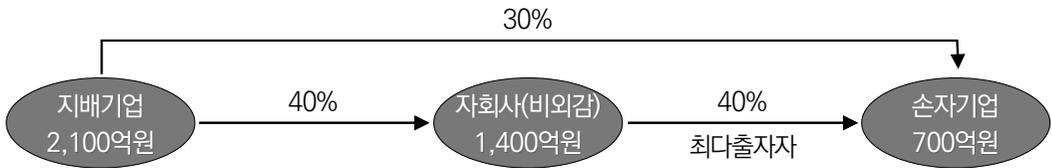
- 지배기업 : 지배기업(2,100억원) + 자회사(1,400억원) + 손자기업(700억원×40%) = 3,780억원
-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간 간접 소유비율 : 100% × 40% = 40%
- 자회사 : 자회사(1,400억원) + 지배기업(2,100억원) + 손자기업(700억원×40%) = 3,780억원
- 손자기업 : 손자기업(700억원) + 자회사(1,400억원×40%) + 지배기업(2,100억원×40%) = 2,100억원
- ※ 자회사가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자회사 손자기업 간 관계기업 성립

유형 4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하고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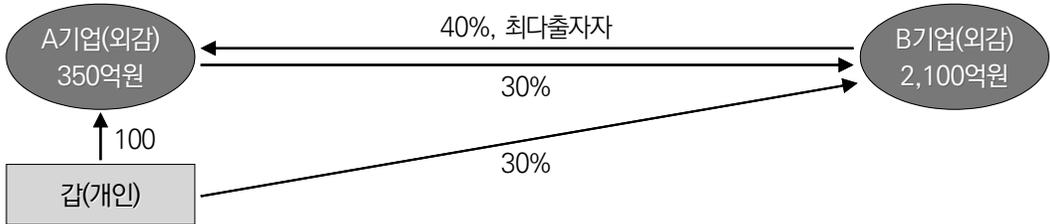
- 지배기업 : 지배기업(2,100억원) + 자회사(1,400억원×40%) + 손자기업(700억원×24%) = 2,828억원
-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간 간접 소유비율 : 40% × 60% = 24%
- 자회사 : 자회사(1,400억원) + 모회사(2,100억원×40%) = 2,240억원
- 손자기업 : 손자기업(700억원) + 지배기업(2,100억원×24%) = 1,204억원

유형 5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 : 지배기업(2,100억원) + 자회사(1,400억원×40%) + 손자기업(700억원×46%) = 2,982억원
-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간 소유비율 : 직접 30% + 간접 16%(=40%×40%) = 46%
- 자회사 : 자회사(1,400억원) + 지배기업(2,100억원×40%) = 2,240억원
- 손자기업 : 손자기업(700억원) + 지배기업(2,100억원×46%) = 1,666억원

유형 6 기업 상호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A기업 : A기업(350억원) + B기업(2,100억원×40%) = 1,190억원
- B기업 : B기업(2,100억원) + A기업(350억원×40%) = 2,240억원

Tip 상호 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기업 간 주식 소유비율이 큰 값을 기준으로 평균매출액을 합산합니다.

관련 법령

[별표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 관련)

-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적용 사례

적용 1 주업종이 신발제조업인 A기업(지배기업)과 부동산임대업인 B기업(종속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이 A기업은 1,700억원, B기업은 2,000억원일 경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 A기업과 B기업의 주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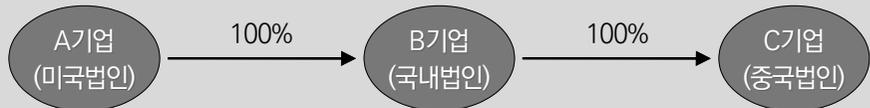
☞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의 주업종은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따라가므로, A기업과 B기업의 주업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간주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A기업의 주업종이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2 유한회사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50%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기업인가요?

☞ 아니오

☞ A기업이 B기업 주식등을 50% 이상 소유하므로 지배·종속관계는 성립하지만, 지배기업인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주식회사에 한정)이 아니므로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적용 3 미국에 소재한 A기업이 국내법인 B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B기업은 중국에 소재한 C기업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 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 아니오



☞ 지배·종속의 관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지배기업을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종속기업을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기업제도는 국내기업 간의 출자관계에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A, B, C기업은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적용 4 A의료법인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최대출자자 요건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A, B법인은 관계기업인가요? ☞ 아니오

☞ 지배·종속의 관계는 상법상 회사 등 영리법인에만 적용합니다.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은 타 법인과 출자관계가 있더라도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용 5 개인(갑)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과 B기업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면 A, B 기업은 관계기업인가? ☞ 아니오

☞ 관계기업은 기업 간에 주식을 소유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지배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A, B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단 1주도 없는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관계 기업도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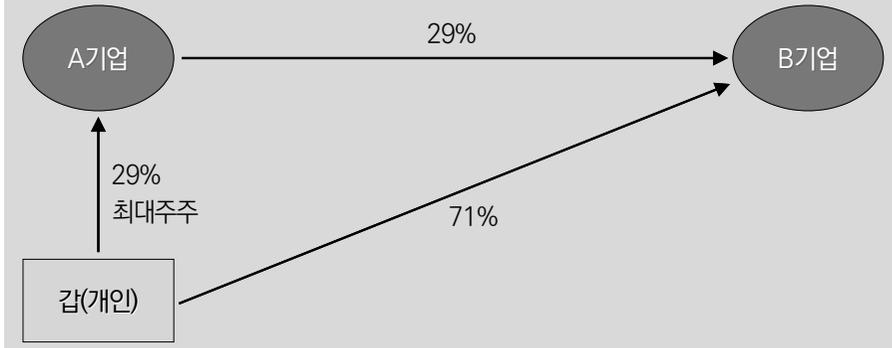
적용 6 A기업(지배기업, 12월 결산법인)과 B기업(종속기업, 3월 결산법인)은 2011년 1월 1일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2월 15일에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전량 제3자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언제부터 관계기업이 아닌가요? ☞ 2016년 4월 1일

☞ 해당 사업연도의 지배·종속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관계로 결정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2015년 2월 15일에 주식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즉시 관계기업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당해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다음 사업연도부터 반영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이므로, 실제 관계기업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2016년 4월 1일입니다.

적용 7 3년 평균 매출액이 1조원인 A중견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기업 B의 주식을 30% 최다출자자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B기업은 중견기업인가? ☞ 네

☞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두 기업은 관계기업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B기업의 평균매출액 산정 시, 형식적 소유(50%미만 소유)로서 지배하고 있는 A기업의 평균매출액의 30%를 합산하므로(3,000억 원) B기업은 당연히 중견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여 중견기업입니다.

적용 8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A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한 개인(갑)이 B기업의 주식을 71% 소유한 경우 A, B기업은 관계기업인가? ☞ 아니오



☞ 개인(갑)은 A기업의 최대출자자이지만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A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A기업과 B기업 간 지배·종속관계 성립여부 판단에 있어서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A기업이 소유한 B기업의 주식이 30% 미만이고 최대출자자가 아니므로 A, B기업 간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용 9 다음과 같이 연속적인 다단계 지분구조를 갖는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은 어느 단계까지 합산하나요? ☞ 최대 상·하 2단계



☞ 지배·종속관계는 간접지배의 경우 최대 상·하 2단계까지만 정의되어 있으므로, 기업별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A기업 : ㉠ 3,500억원 + {㉢ (1,400억원) + ㉣ (2,100억원 × 50%)} = 5,950억원
- B기업 : ㉢ 1,400억원 + {㉠ (3,500억원) + ㉣ (2,100억원) + ㉤ (350억원 × 50%)} = 7,175억원
- C기업 : ㉣ 2,100억원 + {㉠ (3,500억원 × 50%) + ㉢ (1,400억원) + ㉤ (350억원)} = 5,600억원
- D기업 : ㉤ 350억원 + {㉠ (1,400억원 × 50%) + ㉣ (2,100억원)} = 3,150억원

적용 10 A기업(6월결산)이 B기업(15.2.1일 창업, 12월결산)의 주식을 2015년 3월 10일에 50% 인수했다면, 2016년 4월 1일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균매출액등의 합산기준은?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주식등 소유관계는 지배기업의 결산일 기준으로 하되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합산합니다. 즉,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의 직전 3개 사업연도(2012.7.1~2015.6.3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산정일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12개월을 역산하여(15.4.1~16.3.31) 산정하고 이를 합산합니다.

적용 11 외감법인 A기업(12월 결산법인)은 2013년 1월 10일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 B기업과 관계기업이 되었으나, 이후 2015년 7월 20일 B기업이 폐업하였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은 관계기업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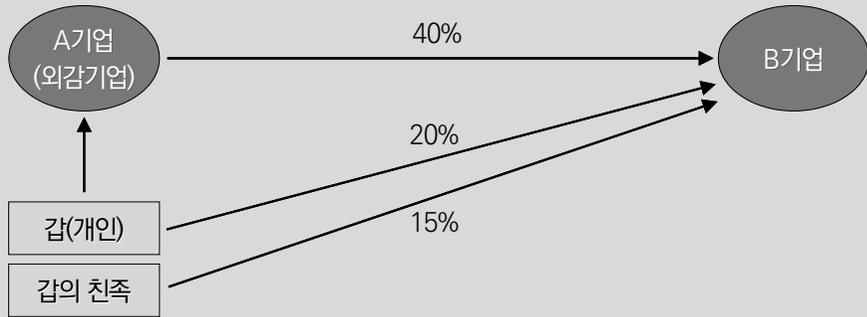
☞ 2015년 이전에는 지배·종속의 관계를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 관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령에서는 창업·합병·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창업일·합병일·분할일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지배·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단순 지분변동은 종전처럼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기업은 2013년 초에 분할했다라도 다음해인 2014년 4월 1일부터 B기업과 관계기업이 성립하며, 2015년 이후에는 관계기업인 B기업이 폐업한 2015년 7월 20일부터 즉시 관계기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12 외감법인 A기업(12월 결산법인)과 B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A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2014년 3월에 분할하였습니다. 2014년 11월에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기업과 B기업 간 규모를 합산하려고 합니다. A기업의 규모는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분할시점으로 판단하나요?

☞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이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경우, 해당기업의 매출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말일 기준으로 매출액 등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을 그대로 활용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관계기업에 속한 A기업의 매출액 산정은 기존법령이 적용되는 2015년 3월 31일까지는 A기업의 2013년 말일 기준의 결산자료를 활용하며, 2015년 4월 이후부터는 '직전사업연도에 분할한 경우로서 직전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므로 산정일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월 매출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 가목 적용)

적용 13

운수업을 영위하는 A기업(3년평균 매출액 700억원, 자산총액 900억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B기업(3년평균 매출액 600억원, 자산총액 500억원)의 주식을 아래 그림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A, B기업은 중견기업 인니까? ☞ 네



* 갑 : 갑의 친족과 합하여 A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

- ☞ ① A기업, 갑, 갑의 친족이 소유한 주식비율을 합산하면 75%로서, 30% 이상 최대출자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지배·종속의 관계 성립
- ② 지배기업인 A기업의 자산총액이 120억원을 초과하여 외부감사대상 기업이므로 관계기업 성립
- ③ 관계기업에 따른 평균매출액의 합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A기업 : A기업(700억원) + B기업(600억원×40%) = 940억원
 - B기업 : B기업(600억원) + A기업(700억원×40%) = 880억원
- ④ A, B기업 모두 관계기업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이 운수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인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를 충족하므로 중견기업입니다.

Tip 관계기업에 있어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업종은 둘 중에서 평균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으로 적용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4 중견기업 제외대상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시장 지배력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은 지정에서 제외합니다.
- 2016년까지는 자산총액 합계액 기준이 5조원이었으나, 5조원 기준이 도입(’08.7월)된 이후 우리나라 GDP 증가율(49.4%), 지정집단 자산 증가율(합계 101.3%/평균 144.6%) 등을 고려하여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16.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한 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제7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201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이, 엘지 등 34개이며, 총 소속회사 수는 1,447개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사항은 매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업집단포털(egro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 ('19년 8월 1일 기준)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회사수
1	삼성	이재용	62
2	현대자동차	정몽구	52
3	에스케이	최태원	113
4	엘지	구광모	73
5	롯데	신동빈	96
6	포스코	(주)포스코	35
7	한화	김승연	86
8	지에스	허창수	64
9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6
10	현대중공업	정몽준	29
11	신세계	이명희	40
12	케이티	(주)케이티	43
13	한진	조원태	31
14	씨제이	이재현	79
15	두산	박정원	23
16	부영	이중근	24
17	엘에스	구자홍	52
18	대림	이준용	27
19	미래에셋	박현주	38
20	에스-오일	에스-오일(주)	3
21	현대백화점	정지선	28
22	효성	조석래	57
23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31
24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주)	5
25	영풍	장형진	24
26	하림	김홍국	53
27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14
28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27
29	케이티엔지	(주)케이티엔지	10
30	코오롱	이웅열	42
31	오씨아이	이우현	18
32	카카오	김범수	73
33	에이치디씨	정몽규	24
34	케이씨씨	정몽진	15
합계			1,447

관련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제2항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2018. 3. 27.>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10조원”으로 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⑦ 중앙회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서는 중앙회 계열회사(제4호의 경우에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 중앙회 계열회사로 한정한다)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산설 2012. 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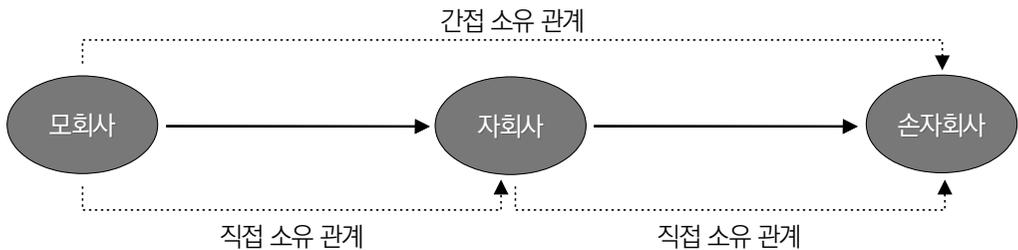
1. 「방송법」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아니더라도, 상호출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10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며, 기타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Tip 1. 국내 기업 중 외국 거대 기업의 투자를 받는 기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을 받기 위해 외국 모기업의 재무정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법인 중 사모펀드와 채권금융기관을 최다출자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근 제도가 개선되어, 이들 기업이 출자한 기업은 중견기업 범위를 충족할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모펀드를 최다출자자에서 제외한 이유는 중견기업에 대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공개하지 않는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채권금융기관을 최다출자자에서 제외한 이유는 중견기업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이 때, 최다출자자는 출자자 개개인 뿐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끼리도 합산하여 판단하는데, 법인주주의 경우 그 법인의 임원과 합산하고 개인은 개인의 친족과 합산하여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동 규정은 직접적인 소유관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직접 소유는 아래의 그림에서 모회사-자회사, 자회사-손자회사의 관계에 해당하며, 간접 소유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거쳐서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 산정방식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하며,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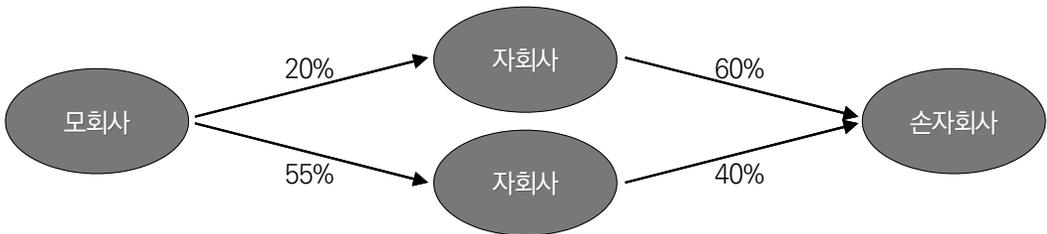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 비율이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60%**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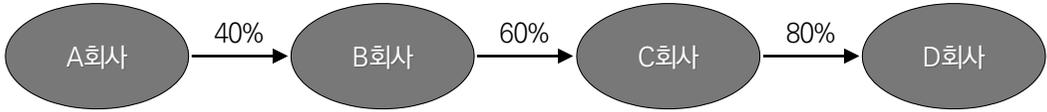
모회사가 자회사를 50% 미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비율과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비율을 곱한 값이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40% × 60% = 24%**

사례 3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한 비율이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20% × 60%) + (55% × 40%) = 52%**

사례 4



간접소유는 각 단계별로 최대출자자 조건을 충족하면 소유관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며, 상위 단계부터 차례대로 계산 ⇒ **간접소유비율 : (40%×60%) × 80% = 19.2%**

- 동 규정은 국내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Tip 외국법인의 경우, 소유관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가 많아 재무정보 및 주주명부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습니다. 이에 중견기업 판정을 용이하게 하고자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요령」 별지4호 참조

관련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제2항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2018. 3. 27.>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대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 가. 금융업
 - 나. 보험 및 연금업
 -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8. 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적용 사례

적용 1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국내법인 B기업과 외국법인 C기업이 각각 50:50으로 공동 출자한 법인입니다. C기업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일 경우 중견기업에서 제외되 나요? ☞ 네

☞ 주식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B기업과 C기업 모두 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C기업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므로, A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2 A기업은 국내법인인 B기업(외감법인, 외국자회사)이 주식을 30% 소유하며 최대주주입니다. B기업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외국법인인 C기업이 100% 주식을 소유한 회사입니다. 이 경우 A기업은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사례1에 해당하는 경우로,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B기업이 외감법인이고 모회사인 C기업의 A기업에 대한 간접소유 비율이 30%이므로 A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비율이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30%**

적용 3 A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B, C가 각각 25%씩 지분을 소유하며 최대주주입니다. 이 경우 A기업은 중견기업 인가요? ☞ 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나목의 규정은 1차적으로 모법인이 피출자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해야 적용합니다. 즉, 소유비율 30% 이상인지 여부는 기업이 소유한 비율로만 판단하고, 최다출자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만 임원이 소유한 비율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동 적용사례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B, C기업의 임원 등이 A기업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A기업이 중견기업 기준에 적합하다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적용 4 A기업은 ○○시가 주식을 36%소유하며 최대주주인 기업입니다. A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1,700억원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데 A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나요?

☞ 개정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15.6.30일 시행)」은 비영리법인을 지배기업으로 보지 않으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나목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에 대한 제외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의 자산이 10조원 이상 이라면 A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5 지배기업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나 보통주를 19%,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42.34%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지분관계에 포함되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나목에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기업의 주식(「상법」 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한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주식은 지분관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 6 A기업의 지배기업은 해외에서 설립한 기업(B)이고 B기업의 지배기업은 국내기업(C)입니다. 세 기업이 관계기업에 적용되나요? ☞ 아니오

☞ 관계기업 제도에서 지배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며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B기업은 외부감사대상이 아니며 종속기업이 아니므로 관계기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7 A기업은 공영방송국의 자회사입니다. 공공기관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데 자회사도 적용되나요? ☞ 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동법 제4조(공공기관)2항에 의거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에서 지정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견기업 기준에 충족한다면 공영방송국의 자회사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공공기관이 소유한 영리법인(자회사)의 경우 규모기준 등을 충족하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8 A기업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B기업과 10조원 미만인 C기업이 각각 50%씩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하나요? ☞ 아니오

☞ 주식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B기업과 C기업은 A기업의 공동최대출자자입니다. 따라서 A기업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B기업이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9 A기업은 해외사모펀드가구가 주식을 33%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최대출자자입니다. 이 경우 해외사모펀드가구의 자산총액 10조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견기업임을 확인하나요? ☞ 아니오

☞ 종전에는 중견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A사는 해외사모펀드가구의 자산총액과 주식투자비율을 확인해야 했으나, '16.8.30일부터는 최대출자자에서 해외사모펀드가구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확인없이 중견기업 확인이 가능합니다.(단, 해외사모펀드가구가 국내에 등록된 집합기구일 경우에만 해당)

적용10 A기업은 경영부실로 구조조정 과정중에 산업은행이 주식의 35%를 소유하여 최대출자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A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 종전에는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산업은행이 최대출자자인 경우 A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원활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최대출자자인 기업은 '16.8.30일부터 중견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사례11 중견기업에 적용 안 되는 업종이 있나요? ☞ 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 2호에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후보기업의 범위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사례12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네

☞ 중견기업을 판정하는 독립성 기준인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경우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업 제도에 따라 지분관계에 있는 지배기업이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업을 최대주주로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13 컴퓨터 제조, 소프트웨어 CD 제조, OLED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은?

☞ 중견기업 여부 판단에 있어서 주업종은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중분류 기준, 그 외의 업종은 대분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부업종이 동일한 중분류 또는 대분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세분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제조(26310)와 OLED 제조(26219)는 같은 중분류(C26)에 속하므로 합산하고, 소프트웨어 CD제조(기록매체 복제업, 18200), 도매업(G)과 비교해서 평균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입니다.

사례14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어느 업종에 속하나요?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매출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매출발생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누면, ① 가맹약정에 따라 본사에서 가맹점에 인테리어, 장비, 의자, 탁자 등을 납품하는 가맹매출, ② 가맹점에 원부자재 등을 납품하는 가맹상품매출, ③ 본사 직영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영상품매출, ④ 가맹점의 매출에 대한 일정금액의 사용료매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맹매출과 가맹상품매출은 도매업(상품 종합 도매업, 46800)으로 분류되며, 직영상품매출은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커피숍이나 제과점의 경우 음식점업으로, 세탁소의 경우 기타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사용료매출은 브랜드 사용권을 임대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무형재산권 임대업, 69400)에 속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별로 어떤 유형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지에 따라 주업종이 달라집니다. 주업종에 따른 매출액 상한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사례15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에서 판단 지표가 되는 매출액, 자산총액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인가요, **연결재무제표** 기준인가요? ☞ 별도재무제표

☞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개별기업의 규모는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이 합산되지 않은 별도재무제표의 값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Tip 연결재무제표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가 자신과 종속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작성하는 반면 **개별재무제표**는 회사별로 작성하게 됩니다. **별도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는 종속회사의 유무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례16

2011년 5월에 창업한 A기업(3월 결산법인)이 2015년 4월 이후에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9개월입니다. 이 때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미만이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평균매출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이라는 점에서 법 취지를 감안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역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 A기업의 평균매출액은 2014년 12월부터 역산하여 36개월이 되는 2012년 1월까지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이 평균매출액입니다.

사례17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A기업과 5,000억원 미만인 B기업이 각각 **50%씩** 주식을 소유한 C기업의 중견기업 여부는? ☞ 중견기업

☞ 주식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A기업과 B기업은 모두 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C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A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중견기업입니다.

사례18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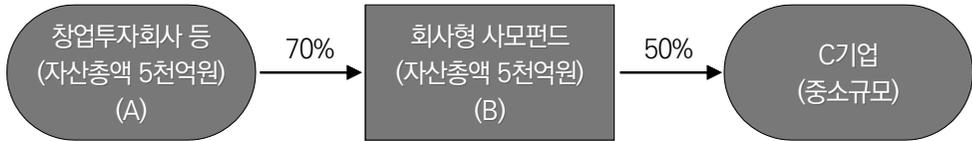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농협중앙회가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고 최대출자자인 피출자회사는 중견기업이 아닙니다.

사례19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사모펀드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일 경우에도 중견기업이 되나요? ☞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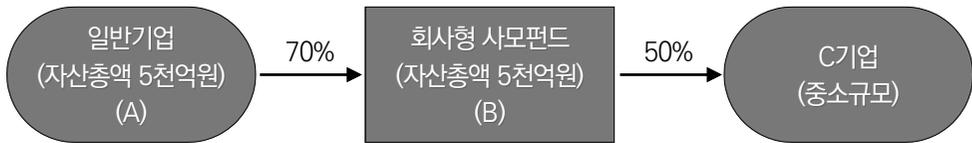
☞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舊 간접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사모집합투자기업의 경우,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각 호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이하 “창업투자회사 등”이라 함)에 해당하므로 펀드에서 출자한 기업은 다른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창업투자회사 등 이외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회사형 펀드의 출자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간접소유 규정에 따라 피출자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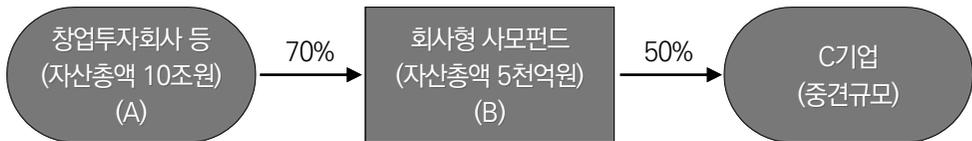
사례 1 C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B펀드가 직접적으로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고, A기업이 간접적으로 C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지만 C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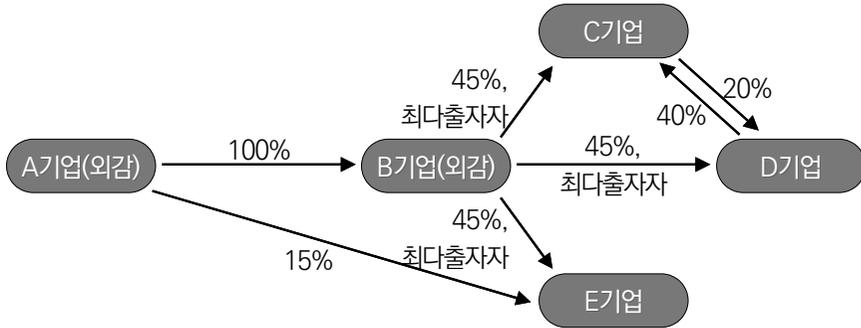
사례 2 아래 그림에서 B펀드가 C기업의 최대주주이고, 창업투자회사 등이 아니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이 간접적으로 C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C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3 아래 그림에서 C기업이 중견기업 규모에 충족한 중견기업이고 창업투자 회사 A가 사모펀드 B를 통해 간접소유한 경우, 지배기업으로 보는 A기업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이므로 C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20 아래와 같은 지분관계를 갖는 기업군이 있을 경우, 기업별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기업별 평균매출액(억원)〉

기업명	㉠ 기업	㉡ 기업	㉢ 기업	㉣ 회사	㉤ 기업
평균매출액	3,000	600	87	330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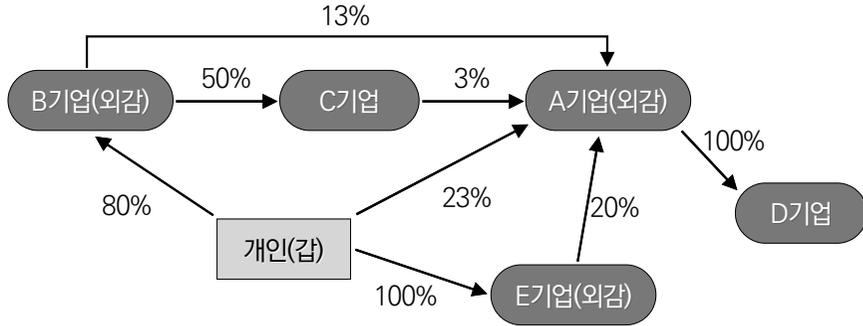
☞ 기업 간의 지배·종속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배기업	종속기업
A기업	-	B(유형1), C(유형3), D(유형3), E(유형2)
B기업	A(유형1)	C(유형1,2), D(유형1), E(유형1)
C기업	A(유형3), B(유형1,2)	-
D기업	A(유형3), B(유형1)	-
E기업	A(유형2), B(유형1)	-

각 기업의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C, D기업의 경우처럼 상호간에 주식을 소유한 때는 높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A기업 = ㉠ 3,000억원 + {㉡ 600억원 × 100%} + ㉢ 87억원 × (100% × 45%) + ㉣ 330억원 × (100% × 45%) + ㉤ 174억원 × (15% + 100% × 45%) = 3,892.05억원
- B기업 = ㉡ 600억원 + {㉠ 3,000억원 × 100%} + ㉢ 87억원 × (45% + 45% × 40%) + ㉣ 330억원 × (45% + 45% × 40%) + ㉤ 174억원 × 45% = 3,941.01억원
- C기업 = ㉢ 87억원 + {㉠ 3,000억원 × (100% × 45%) + ㉡ 600억원 × (45% + 45% × 40%)} = 1815억원
- D기업 = ㉣ 330억원 + {㉠ 3,000억원 × (100% × 45%) + ㉡ 600억원 × (45% + 45% × 40%)} = 2058억원
- E기업 = ㉤ 174억원 + {㉠ 3,000억원 × (15% + 100% × 45%) + ㉡ 600억원 × 45%} = 2244억원

사례21 아래와 같은 지분관계를 갖는 기업군이 있을 경우, 기업별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 그림에 표시되지 않은 잔여 지분은 기타 소액주주로 간주

〈기업별 평균매출액(억원)〉

기업명	Ⓐ 기업	Ⓑ 기업	Ⓒ 기업	Ⓓ 회사	Ⓔ 기업
평균매출액	900	600	300	240	150

☞ 먼저 지배·종속 관계를 파악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지배기업	종속기업	중견기업 여부
A기업(C20)	B(유형2), E(유형1)	D(유형1)	중견
B기업(F)	-	A(유형2), C(유형1)	중견
C기업(G)	B(유형1)	-	중소
D기업(C28)	A(유형1), E(유형3)	-	중소
E기업(H)	-	A(유형1), D(유형3)	중소

각 기업의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기업 = Ⓐ 900억원 + {Ⓑ 600억원 × (13% + 3%) + Ⓔ 150억원 × 20%} + Ⓓ 240억원 × 100%
= 1,266억원
- B기업 = Ⓑ 600억원 + {Ⓐ 900억원 × (13% + 3%) + Ⓒ 300억원 × 100%} = 1,044억원
- C기업 = Ⓒ 300억원 + (Ⓑ 600억원 × 100%) = 900억원
- D기업 = Ⓓ 240억원 + {(Ⓐ 900억원 × 100%) + (Ⓔ 150억원 × 20%)} = 1,170억원
- E기업 = Ⓔ 150억원 + {(Ⓐ 900억원 × 20%) + (Ⓓ 240억원 × 20%)} = 378억원

3 공공기관

- 「중견기업법」 제2조에 의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2019년 기준 총 339개가 지정되었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중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 2조원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이상인 공기업으로 16개 기관입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20개 기관입니다.
-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으로 14개 기관입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79개 기관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210개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 지정은 매년 연초에 1회 실시하며, 최초 지정된 내역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인한 통폐합으로 연중 변동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Tip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www.alio.go.kr)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사이트로, 기관별 보고서, 공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공공기관 지정내역(총 339개)

구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6)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0)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9)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분	(주무기관) 기관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9)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 (210)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구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10)	(문체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산업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위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새민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홍소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4 지방공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은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1969년 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Tip 지방공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수도사업(마을상수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 복리 증진이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체육시설업,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

- 지방공기업은 그 경영행태나 소유지배구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그밖에 출자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업 가운데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하며, 전형적인 유형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사업마다 공무원 관리자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경영을 관리감독하며, 소속 직원은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 지방공사도 지방직영기업과 마찬가지로 설립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다른 점은 채용 조달방법에 있습니다. 지방공사는 재원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으로 충당합니다. 또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법인의 형태로 간접경영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지방공사가 민간성격의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것과 달리 지방공단은 지방정부의 공공성 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 지정, 경영정보 등에 대한 내용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Tip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Local Public Enterprise Clean-Eye)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2007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방공기업 설립 현황(총 405개, '19. 7. 15 기준) *지역 가나다순

지역	구분	운영	공기업유형	지방공기업명
강원도	광역	간접	도시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기타공사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기초	간접	지방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공영개발	춘천시공영개발, 원주시공영개발, 강릉시공영개발
		직영	상수도	춘천시상수도, 원주시상수도, 강릉시상수도, 동해시상수도, 태백시상수도, 속초시상수도, 삼척시상수도, 홍천군상수도, 영월군상수도, 평창군상수도, 정선군상수도, 철원군상수도, 인제군상수도, 고성군상수도, 양양군상수도
			하수도	춘천시하수도, 원주시하수도, 강릉시하수도, 동해시하수도, 속초시하수도
경기도	광역	간접	기타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도시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기초	직영	공영개발	경기도한류월드조성사업, 경기도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경기도고덕국제화계획지구
			기타공사	수원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천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안산시공사, 남양주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김포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포천도시공사(구. 포천시시설관리공단19. 6. 3.), 하남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양평공사
		간접	지방공단	안양도시공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여주도시관리공단(시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공영개발	수원시공영개발, 성남시공영개발, 의정부시공영개발, 시흥시공영개발, 안성시공영개발, 의왕시공영개발, 과천시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직영	상수도	수원시상수도, 성남시상수도, 고양시상수도, 부천시상수도, 용인시상수도, 안산시상수도, 안양시상수도, 남양주시상수도, 의정부시상수도,		

지역	구분	운영	공기업유형	지방공기업명
				평택시상수도, 시흥시상수도, 화성시상수도, 광명시상수도, 파주시상수도, 군포시상수도, 광주시상수도, 김포시상수도, 이천시상수도, 구리시상수도, 양주시상수도, 안성시상수도, 포천시상수도, 오산시상수도, 하남시상수도, 의왕시상수도, 동두천시상수도, 과천시상수도, 여주시상수도, 양평군상수도, 가평군상수도, 연천군상수도
			하수도	수원시하수도, 성남시하수도, 고양시하수도, 부천시하수도, 용인시하수도, 안산시하수도, 안양시하수도, 남양주시하수도, 의정부시하수도, 평택시하수도, 시흥시하수도, 화성시하수도, 광명시하수도, 파주시하수도, 군포시하수도, 광주시하수도, 김포시하수도, 이천시하수도, 구리시하수도, 양주시하수도, 안성시하수도, 포천시하수도, 오산시하수도, 하남시하수도, 의왕시하수도, 동두천시하수도, 과천시하수도, 여주시하수도, 양평군하수도, 가평군하수도, 연천군하수도
경상남도	광역	간접	도시개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기초	간접	기타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지방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창원군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직영	공영개발	창원시주택건설, 진주시공영개발, 김해시공영개발, 의령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상수도	창원시상수도, 진주시상수도, 통영시상수도, 사천시상수도, 김해시상수도, 밀양시상수도, 거제시상수도, 양산시상수도, 함안군상수도, 창원군상수도, 거창군상수도, 합천군상수도, 고성군상수도
하수도	창원시하수도, 진주시하수도, 통영시하수도, 사천시하수도, 김해시하수도, 밀양시하수도, 거제시하수도, 양산시하수도, 창원군하수도, 거창군하수도, 고성군하수도			
경상북도	광역	간접	기타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도시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지역	구분	운영	공기업유형	지방공기업명		
	기초	간접	기타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지방공단	포항시설관리공단,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직영	상수도	포항시상수도, 경주시상수도, 김천시상수도, 안동시상수도, 구미시상수도, 영주시상수도, 영천시상수도, 상주시상수도, 문경시상수도, 경산시상수도, 의성군상수도, 영덕군상수도, 칠곡군상수도, 울진군상수도, 예천군상수도		
			하수도	포항시하수도, 경주시하수도, 김천시하수도, 안동시하수도, 구미시하수도, 영주시하수도, 영천시하수도, 상주시하수도, 문경시하수도, 경산시하수도, 영덕군하수도, 칠곡군하수도, 예천군하수도		
		광주 광역시	광역	간접	기타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도시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지방공단	광주환경공단					
직영	상수도		광주광역시상수도			
	하수도		광주광역시하수도			
기초	간접	지방공단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대구 광역시	광역	간접	도시개발공사	대구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지방공단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직영	상수도	대구광역시상수도		
	하수도		대구광역시하수도			
	기초	간접	지방공단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		
대전 광역시	광역	간접	기타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도시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지방공단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직영 직영	상수도	대전광역시상수도			
		하수도	대전광역시하수도			
부산 광역시	광역	간접	기타공사	부산관광공사		
			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지방공단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경륜)		
	직영	상수도	부산광역시상수도			
		하수도	부산광역시하수도			
기초	간접	지방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시설)			

지역	구분	운영	공기업유형	지방공기업명	
서울 특별시	광역	간접	기타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도시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지방공단	서울시설공단	
		직영	상수도	서울특별시상수도	
	하수도		서울특별시하수도		
	기초	간접	지방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시설),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종량구시설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시설), 강북구도시관리공단(시설),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시설),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시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시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시설)	
	세종특별 자치시	광역	간접	기타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지방공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영	공영개발	세종특별자치시공영개발	
상수도			세종특별자치시상수도		
하수도	세종특별자치시하수도				
울산 광역시	광역	간접	도시개발공사	울산도시공사	
			지방공단	울산시설공단	
		직영	상수도	울산광역시상수도	
			하수도	울산광역시하수도	
	기초	간접	지방공단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시설),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시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인천 광역시	광역	간접	기타공사	인천관광공사	
			도시개발공사	인천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지방공단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직영	공영개발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	인천광역시상수도	
	하수도	인천광역시하수도			
	기초	간접	지방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지역	구분	운영	공기업유형	지방공기업명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시설),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전라남도	광역	간접	도시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간접	지방공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기초	직영	공영개발	목포시공영개발, 순천시공영개발, 광양시공영개발 목포시상수도, 여수시상수도, 순천시상수도, 나주시상수도, 광양시상수도, 화순군상수도, 영암군상수도, 영광군상수도
			하수도	목포시하수도, 여수시하수도, 순천시하수도, 나주시하수도, 광양시하수도, 화순군하수도, 영암군하수도, 영광군하수도
전라북도	광역	간접	도시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간접	기타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기초	간접	지방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공영개발	익산시공영개발
		직영	상수도	전주시상수도, 군산시상수도, 익산시상수도, 정읍시상수도, 남원시상수도, 김제시상수도, 완주군상수도, 고창군상수도, 부안군상수도
			하수도	전주시하수도, 군산시하수도, 익산시하수도, 정읍시하수도, 남원시하수도, 김제시하수도, 완주군하수도
제주특별 자치도	광역	간접	기타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도시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영	상수도	제주특별자치도상수도	
		하수도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	
충청남도	광역	간접	도시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기타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기초	간접	지방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부여군시설관리공단
			공영개발	천안시공영개발, 보령시공영개발, 아산시공영개발, 계룡시공영개발
직영	상수도	천안시상수도, 공주시상수도, 보령시상수도, 아산시상수도, 서산시상수도, 논산시상수도, 계룡시상수도, 당진시상수도, 금산군상수도,		

지역	구분	운영	공기업유형	지방공기업명
				부여군상수도, 서천군상수도, 홍성군상수도, 예산군상수도, 태안군상수도
			하수도	천안시하수도, 공주시하수도, 보령시하수도, 아산시하수도, 서산시하수도, 논산시하수도, 계룡시하수도, 당진시하수도, 부여군하수도, 홍성군하수도, 태안군하수도
충청북도	광역	간접	도시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기초	간접	지방공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관리공단,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직영	공영개발	충주시공영개발, 음성군공영개발
			상수도	청주시상수도, 충주시상수도, 제천시상수도, 옥천군상수도, 영동군상수도, 진천군상수도, 음성군상수도, 단양군상수도
			하수도	청주시하수도, 충주시하수도, 제천시하수도, 옥천군하수도, 증평군하수도, 진천군하수도, 음성군하수도

관련 법령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지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중견기업 확인

1. 중견기업 확인제도 안내
2. 특례대상 중견기업
3.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II. 중견기업 확인

{ 중견기업 확인제도 안내(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 등), 특례대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부여기준 및 경과조치 적용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

1 중견기업 확인제도 안내

1 확인개요

-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이며, 중견기업 지원사업 참여 및 조세 지원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인력·교육) 내일채움공제, 고용장려금,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
 (기술·R&D)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전문연구요원, 특허 출원료 감면 등
 (수출·무역) 중견기업 금융지원 및 특화서비스, 수출 및 수입 금융 등
 (경영·동반선장) 매출채권보험, 투자 및 운영 자금대출 등

- 중견기업의 범위 및 기준은 본 책자의 I. 중견기업이란? 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 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②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③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금융·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④ 비영리법인
- ⑤ 외국법인(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⑥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4에 해당하는 기업(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2 확인절차

- 중견기업 확인서의 발급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을 통한 접수 및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확인절차 참고)

* 중견기업 정보마당 : www.mm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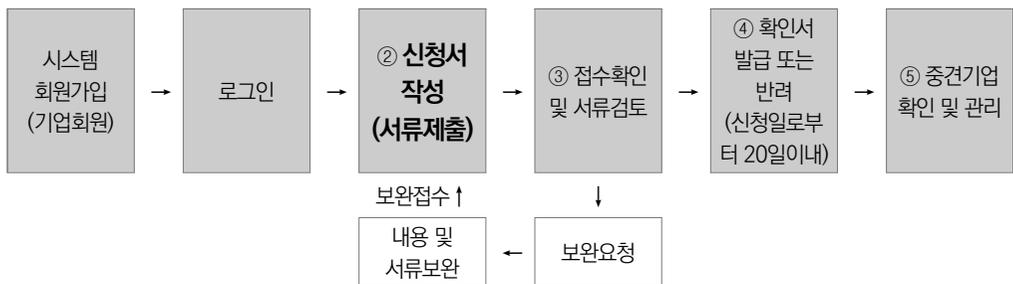
- 중견기업 확인서의 발급 및 중견기업 정보마당 운영기관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입니다. 하지만 중견기업 정보마당의 회원가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가입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견기업 정보마당 가입 및 중견기업 확인서의 발급을 위한 비용은 무료입니다.

* 중견기업 정보마당 시스템 회원가입 : www.mme.or.kr (가입 및 이용료 무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가입 문의 : www.fomek.or.kr / 02-3275-2985 + 1번 (연회비 있음)

Tip 중견기업 정보마당 시스템 회원가입은 1개의 법인당 1개의 계정(ID/PW)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미 가입되어 있으나 계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가입정보 조회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중견기업 확인서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발급(사업장별로 개별 발급하지 않음)되며, 매년 직전사업연도 결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시 중견기업 정보마당을 통해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통상적으로, 중견기업 확인서의 접수가 집중되는 3~6월을 제외하고, 발급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보완요청 및 접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3 제출서류 안내

- 중견기업 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확인신청서 작성시,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Tip 주주명부는 요약 주주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개인정보는 반드시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Tip 외부감사대상기업은 감사보고서(별도), 비외감기업은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공시대상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 중견기업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 확인보고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서류 필요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Tip 전년도 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이었던 기업이 중견기업 확인서를 최초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시 첨부파일 공란에 전년도 '중소기업 확인보고서'를 제출바랍니다. 중소기업 확인보고서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제출서류는 신청기업 및 관계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입니다. 단, 신청기업의 창업·분할·합병 등의 경우 발생 당시부터 신청기업의 규모를 판정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Tip 신청기업의 서류는 온라인(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확인신청서 작성시 해당란에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고, 추가로 요청받은 서류가 있다면 첨부파일 공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업의 관계기업(직·간접 지분관계가 30% 이상인 국내외 지배기업·국내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와는 별도로, 관계기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시, 관계기업 제출서류는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확인신청서 작성시 신청기업 및 관계기업 제출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Tip 관계기업의 서류는 온라인(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확인신청서 작성시 '관계기업추가' 버튼을 눌러, 관계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신청기업(일반) 제출서류

신청기업(일반)
1.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 2.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 단, 신청기업이 **관계기업(신청기업의 지배·국내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와는 별도로 관계기업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제출바랍니다.

② 신청기업(창업·분할·합병 등의 경우) 제출서류

창업·분할·합병 등이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창업·분할·합병 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1. 창업·분할·합병 발생 당시 주주명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 및 감사보고서 3.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 발생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월별 매출액 증빙 서류 (손익계산서 등) 5. (해당시) 분할보고서	1. 창업·분할·합병 발생 당시 주주명부 2. 신청일 당시 주주명부 3. 법인등기부 등본 4. 발생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월별 매출액 증빙 서류 (손익계산서 등) 5. (해당시) 분할보고서

☞ 단, 신청기업이 창업·분할·합병 등의 경우이면서, **관계기업(신청기업의 지배·국내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와는 별도로 관계기업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제출바랍니다.

③ 관계기업 제출서류

관계기업 (직·간접 지분관계가 30% 이상인 국내 지배·국내 종속기업)

1.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
2. 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3. (창업·분할·합병 해당시) 발생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월별 매출액 증빙서류

관계기업 (직·간접 지분관계가 30% 이상인 국외 지배기업)

1. 직전 사업연도 말 최상위 지배기업까지 지분관계 증빙
 (예시) 지분구조도, 개별 주주명부
2. 최상위 지배기업까지 각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개별 자산규모(Total Assets) 증빙
 (예시) Annual Report, Financial Report, Balanced Sheet, List of Shareholders, List of Subsidiaries, 유가증권보고서(일본) 등

☞ 관계기업 (직·간접 지분관계가 30% 이상인 국외 지배기업)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하나, 영어 또는 일어의 경우 원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중견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월말을 기준으로 규모 또는 독립성을 판단하며, 결산월의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합니다.

Tip 예시 : 2018년 12월 결산 → 유효기간 2019년 4월 1일 ~ 2020년 3월 31일

2019년 3월 결산 → 유효기간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Tip 유효기간이 만료된 확인서의 발급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 접수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분할·합병한 기업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부여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지정 해제된 이후 중견기업 범위 및 기준 충족시, 지정 해제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부여합니다.

5 관련문의

- 중견기업 정보마당 시스템(www.mme.or.kr)에 접속하여 중견기업 범위 및 기준, 확인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자주하는 질문, 공지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바랍니다.
- 확인 후에도 찾고자 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 온라인 묻고답하기 또는 운영기관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 중견기업 정보마당 시스템 이용절차 및 오류 문의 : 02-3275-0107

* 중견기업법(범위) 및 확인서 발급 후속조치 문의 : 02-3275-2994

관련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신청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 및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

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 8.>

1. 중견기업사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사업자등록번호
- 나. 납입자본금
- 다. 매출액
- 라.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 마.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 1. 8.>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 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중견기업 확인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18호, 2019. 7. 25., 일부개정)

제4조(확인신청)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온라인 시스템의 신청방법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업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종료 여부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하나라민원)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감사보고서 등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 발급시기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의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 기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중견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확인서 발급) ① 확인기관 장은 중견기업 확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중견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특례대상 중견기업 확인 표시는 제3조의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한정한다.

제6조(유효기간) 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②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 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 제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창업 등을 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까지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1.28, 2011.12.28, 2013.6.28, 2013.10.16, 2016.4.5, 2018.10.30>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가. 법인인 기업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적용 사례

적용 1 2015년 7월 3일에 창업한 A기업(12월 결산법인)에 대해 2016년도에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할 경우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한 경우로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날(산정일)에 따라 적용기간이 달라집니다. 산정일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하기 전(2016.1.1. ~ 2016.3.31.)이라면, 창업일 2015.7.3부터 2016.3.31까지 유효기간입니다. 한편, 산정일이 2016년 4월 1일 이후라면, 일반기업처럼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적용 2 A기업(12월 결산법인)은 2015년 5월 30일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다만, 2015년 7월 중에 주식의 70%를 대기업인 B기업(12월 결산법인)이 인수하였다면, 언제부터 중견기업이 되나요?

☞ 개별기업의 크기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된 날부터, 주식을 취득한 B기업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계기업 제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주식 인수 시점에서 지배기업인 B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2014.12.31.) 현재에는 두 기업이 주식 소유 관계가 없으므로 즉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5년도 말일까지 A, B기업 간 지분관계가 유지된다면 2016년 4월 1일부터 관계기업 제도가 적용됩니다.

Tip 관계기업 여부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적용 3 LED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100억원입니다. 2015년 8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언제부터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나요?

☞ A사는 개별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므로 2015년 8월 1일부터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해제 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조건 외의 다른 범위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해제 된 날부터 중견기업에 다시 편입됩니다.

적용 4 2010년도에 창업한 A기업(3월 결산법인)의 2015년도 중견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며, 중견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 2015년도에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할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인 2012, 2013, 2014년도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이 중소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면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중견기업입니다.

적용 5 12월 결산법인인 A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을 초과하여 2013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견기업이었지만 2015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령에서는 상시근로자수 상한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그럼 다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기존 법령에 따른 적용기간(2014.4.1~2015.3.31) 동안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정법령에 따라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등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만족한다면 2015년 4월 1일부터 다시 중소기업에 속하게 됩니다.

2 특례대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의 특례를 규정하여 중소기업에 한하여 인정되는 지원사업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Tip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은 가업승계지원, 명문장수기업, 기술보호지원, 국외 판로지원, 매출채권보험, 사업전환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받을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제9조의8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례대상 중견기업의 요건은 두 가지가 있으며, 특례에 따라 모두 충족해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각 특례별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상이하므로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제9조의8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일 것
- * 지원사업별 특례 기준이 상이하므로 기준을 확인할 것

-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중견기업 확인서입니다. 특례대상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시 특례여부 확인에 ‘예’를 선택해야 합니다.

- 특례여부 확인 요청시, 중견기업 확인서에 특례 요건 충족여부가 명시되어 발급됩니다. 판정 시, 과거 연도의 자료까지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ip 이미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특례대상 중견기업 여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중견기업 정보마당 담당자를 통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검토를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 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제14조(대기업인 이력나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5제2항에 따른 대기업에서 제외한다.

제15조(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4부터 제6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16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견기업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는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 제17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7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국외 판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7조의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7조의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7조의7(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①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31조 및 제32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보고, 같은 법 제32조 중 “지원센터”는 “이 법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견기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대기업인 이력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1천5백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전문개정 2016. 8. 29.]

제9조(기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2(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본조신설 2017. 6. 2.]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7. 6. 2.>]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6. 8. 29.]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17. 6. 2.>]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7. 6. 2.>]

제9조의5(국의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6. 8. 29.]

[제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17. 6. 2.>]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7. 9.]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목개정 2019. 4. 2.]

[제9조의6에서 이동 <2017. 6. 2.>]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7. 9.]

3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1 중소기업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유예기간이 소멸됩니다.
 -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③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

유예제외 사유별 개정연혁

유예제외사유	도입 및 개정연혁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95.7.1.) 유예제외 도입
유예중인 기업과 합병	■ ('95.7.1.) 유예제외 도입
창업한지 1년 이내에 규모기준 초과	■ ('95.7.1.) 유예제외 도입 ■ ('15.1.1.) 유예 허용
독립성기준 미충족	■ ('97.12.31.) 대규모집단 유예제외 추가 (향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 ■ ('02.5.20.)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자회사(30%)일 경우 유예제외 (모든 독립성기준 미충족 시 유예제외) ■ ('11.1.1.) 관계기업 제도 도입과 함께 유예제외사유 추가 ■ ('14.1.1.)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 허용 ■ ('15.1.1.) 모든 관계기업 유예 허용 ■ ('16.4.28)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자회사(30%)일 경우, 유예부여
상한기준 초과	■ ('12.1.1.) 유예제외 추가 ■ ('15.1.1.) 유예 허용

- 2015년 1월 1일 시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크게 확대함과 동시에, 제도를 악용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계선을 반복적으로 넘나 들며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예를 1회로 한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즉, 2015년 이후 중견기업이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3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이후에 다시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유예 없이 곧바로 중견기업이 됩니다.

2] 경과조치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범위 및기준의 변동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 등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경과조치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이렇듯 경과조치가 3년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예기간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명백한 차이점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사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의 규정으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적용기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령이 정하는 기간으로서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음 (종료일을 정함)
적용제외 대상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유예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경과조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전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하며, ‘개정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유예중인 기업을 포함하지 않는 본래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만을 의미합니다.
- 개정규정이라 함은 말 그대로 당해 법령에서 개정된 조문을 의미하는데,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등의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남은 경과조치기간이 소멸되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며 중견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경과조치에 해당하여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 기업에 대해서는 이후 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과조치를 받은 이후에 중소기업 규모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중견기업이 됩니다.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5302호, 2014.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에 관한 특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적용 사례

적용 1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12월 결산법인)이 2013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종별 규모기준(근로자 300명, 자본금 80억)을 초과하였습니다.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유예기간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부여됩니다. 따라서 A기업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유예기간 중에 유예제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잔여 유예기간이 소멸됩니다.

적용 2 2015년 1월 1일 현재 유예중인 기업이 규모의 축소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다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 네

☞ 2015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되는 유예 1회 제한제도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유예기간이 시작된 경우에만 횟수를 제한하므로, 2015년 1월 1일 현재 유예중인 기업도 2015년 이후에 유예기간을 1회에 한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3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12월 결산)은 2014년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2~2014년 3년평균 매출액은 850억원입니다. A기업은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 A기업의 경우 2015년 4월 1일 이후 개정법령(음료 제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을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25302호, 2014.4.14.) 제2조제1항경과조치 규정에 의해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경과조치 기간 중 또는 만료 이후에 규모가 축소하여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 4 A기업(12월 결산)은 '15년 개정규정으로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16년 판정시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유예를 부여받나요? 경과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 유예 부여

☞ 경과조치는 종전규정으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15년 개정규정으로 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만 한하므로 '15년 개정규정에도 중소기업인 A기업은 경과조치 해당기업이 아닙니다. A기업은 규모 확대로 중견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직전사업연도 다음해부터 3년 동안 유예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6.4.1-'19.3.31)

적용 5 '15년 3월 31일로 유예가 종료되는 유예 3년차 기업입니다. '16년 기업규모를 판정하여 중견 기업에 해당할 경우 경과조치에 해당하나요? ☞ 아니오

☞ '중소기업으로 보는 중'에 있는 유예기간 중 기업은 경과조치 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경과조치는 개정 이전 규정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에 한해 부여됩니다.

적용 6 A기업은 종전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16년에 처음 중견기업 판정을 받게 된다면 경과조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경과조치는 '15년 개정규정으로 인해 중견기업이 되는 기업에 '15.4.1-18.3.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기간입니다. A기업이 '16년에 처음 판정을 받았다할지라도 '15년 개정규정에 중견기업이고 '16년에도 중견기업이라면 남아있는 경과조치 기간은 '16.4.1-'18.3.31일까지입니다.

적용 7 '16.3.31일 유예가 종료되는 유예 2년차 기업입니다. 개정규정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할 시 곧바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유예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규모확대나 관계기업 등으로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 부여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종전에 받은 유예가 종료시 중견기업에 기준에 적합하다면 중견기업입니다.

다만, 귀사가 규모의 축소로 중소기업으로 편입된 후('17년) 다시 규모가 확대되어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해부터 3년간 유예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 이전 유예와 상관없이 '15년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유예 인정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사례22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적용하는 **현행 법령은 규모기준(자산기준 포함)외에도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중견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업종별규모기준(3년평균매출액)과 자산총액(5천억원이상), 독립성기준(자산5천억 이상 기업의 30% 주식 등 피출자기업)입니다. 이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여도 중견기업이 됩니다.

사례23

2015년 1월 1일 현재 **유예중인 기업은 현행법령에 따라 유예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네

☞ 현행법령 시행전에 유예중인 기업도 유예제외 사유에 추가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기존 유예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여부는 매년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24

중소기업 졸업유예를 1회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유예 받은 적이 있는 기업도 해당 하나요?** ☞ 네

☞ 2015년 1월 1일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해 2015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유예기간이 시작된 경우에만 1회 제한횟수로 인정하므로, 2015년 1월 1일 현재 유예중이거나 과거에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던 적이 있었던 기업도 2015년 이후에 1회에 한해서 유예기간 3년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유예 3년차 기업이 '16년 규모 확대로 중견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견기업이 되면, 이 때 3년간 유예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5

창업일 당시 기업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창업과 동시에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때에는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사례26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유예중에 있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있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합병하는 경우는 유예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업은 합병에 따른 법인 변경 등기일부터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사례27

개정 이전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15년 개정된 현행 법령에 의해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경과조치가 있나요? ☞ 네

☞ 종전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현행 법령에 따라 중견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기존중소기업에 관한 특례에 따라 경과조치를 부여받아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경과조치는 종전 규정으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현행 법령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이며, 유예기간은 종전 규정에 중소기업이었거나 중소기업으로 보는 중에 있는 기업(유예)에 한 해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례28

중견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 중견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결산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 신청일에 따라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업의 결산일에 따라 유효기간이 고정되어 부여됩니다.

사례29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확인서를 갱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중견기업확인서는 법적 규정에 따라 직전 3개년 매출액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유효기간 만료시 새로운 중견기업확인서를 받고자 할 때도 직전 3개년 매출액등 확인서신청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례30

모기업이 외국법인인 경우 어떤 자료를 제출하나요?

☞ 모기업이 외국법인인 경우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annual report 또는 유가증권보고서(일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주명부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확인요령 서식을 작성하여 번역 공증 후 제출하면 됩니다.



중견기업 후보기업



III. 중견기업 후보기업

{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인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서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 4항에 따른 아래 요건들의 조합인 ① 또는 ②&③ 또는 ②&④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②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 *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 ③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 ④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구분을 위한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별표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제2조제4항제2호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000억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700억원 이상
8. 광업	B	
9. 식품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매출액 550억원 이상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제2조제4항제2호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2. 운수 및 창고업	H	매출액 400억원 이상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300억원 이상
41. 부동산업	L		
42. 임대업	N76		
43.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중견기업 후보기업 구분을 위한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별표2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제2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 \sqrt[n]{A/B} - 1$$

A: 산정 대상 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B: 산정 대상 기간의 최초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n: 최종 사업연도에서 최초 사업연도를 뺀 기간

관련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중견기업 확인요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약칭: 중견기업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7호, 2019. 1. 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과) 044-203-43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시책별로 그 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

1. 고용 증대, 수출 촉진, 산업 간 연관효과 등 국민경제적 효과
2. 규모 및 성장률, 연구개발 집약도, 국제경쟁력 등 기업의 특성
3. 그 밖에 기업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중견기업자의 책무) ① 중견기업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견기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중견기업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중견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중견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성장 현황 및 전망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조세·금융·기술개발·인력·경영혁신·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규모 및 성장률, 국제화 등 중견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거래 공정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

영하여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6. 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7. 중견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고용창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중견기업 및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제7조(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 등 기업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절차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2.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등의 지원
3. 중견기업이 되면서 신규로 적용되는 규제의 적용 완화 또는 배제

제9조(업종별 중견기업시책) ① 정부는 기술현황 및 전망 등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종별 중견기업 후보기업·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인력·경영·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업종별 특수성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별 중견기업시책) ①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술·인력·경영·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입지·조세·고용 등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 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제14조(대기업인 이력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2항에 따른 대기업에서 제외한다.

제15조(기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4부터 제6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16조(중소기업 음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음부즈만은 중견기업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는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 제17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7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7조의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인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7조의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인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7조의7(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①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31조 및 제32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보고, 같은 법 제32조 중 “지원센터”는 “이 법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견기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① 정부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등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3.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5. 그 밖에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
2. 중장기 경쟁력 강화, 신사업 창출 및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3. 정부출연연구소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중견기업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4. 산학연(産學研) 공동연구 기술개발
5.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정보 및 기술교류 촉진
6.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및 분쟁대응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취업 예정자·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의 홍보
 2.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에 대한 취업 알선
 3. 중견기업등에 소속된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및 사기진작
 4. 중견기업등의 사내교육 등 직원의 역량강화
 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출기업 및 제품의 국제적 브랜드개발
 2.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3. 외국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4. 해외 홍보 지원 및 해외 투자 유치
 5. 그 밖에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모델 개발 및 보급
 2. 중견기업 후보기업자 및 중견기업자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항
 3.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확산
 4.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제23조(전문기관) ① 정부는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둔다. <개정 2016. 5. 29.>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2. 중견기업의 기술·경영·인력·수출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3. 세계적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 5. 29.]

제24조(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신청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제25조의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 및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 8.>

1.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사업자등록번호
 - 나. 납입자본금
 - 다. 매출액
 - 라.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 마.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 1. 8.>
 -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 8.>

제27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①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중견기업자 간의 교류협력 및 상호부조에 관한 사업
 2. 중견기업시책 및 지원제도, 기술·경영동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
 3. 중견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실태·통계조사
 4.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정책건의
 5. 해외 기업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6.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각종 간행물 발간
 7.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회원의 복리 증진, 연합회의 목적과 관련된 수익사업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 중견기업자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다.
- ⑥ 연합회의 설립·운영·정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인식개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우수 중견기업자 및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중견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삭제 <2019. 1. 8.>
4. 그 밖에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8조의2(중견기업 주간) ① 중견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중견기업 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중견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연합회 또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17. 7. 26.>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 제31조(과태료)** ①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2307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중견기업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중견기업 확인서는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

제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직원 및 회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의를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법률 제1227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72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66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923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7호, 2019. 1.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견기업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58호, 2019. 7. 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과) 044-203-4362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 8.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2018. 3. 27.>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대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 가. 금융업
 - 나. 보험 및 연금업
 -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8. 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 279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 되어 진행 중인 기업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특허청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9.]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7. 9.]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9. 7. 9.]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9. 7. 9.]

제4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5조(업종별·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또는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견기업시책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8조(대기업인 이력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1천5백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전문개정 2016. 8. 29.]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2(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본조신설 2017. 6. 2.]

[중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7. 6. 2.>]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6. 8. 29.]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17. 6. 2.>]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7. 6. 2.>]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6. 8. 29.]

[제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17. 6. 2.>]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7. 9.]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목개정 2019. 4. 2.]

[제9조의6에서 이동 <2017. 6. 2.>]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기업 역량의 우수성
 2. 전략 및 실행 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
 3. 비전 및 목표의 달성 가능성
 4. 그 밖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역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업체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4.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2.>

1. 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조신설 2016. 8. 29.]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수탁·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의 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29조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발급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2017. 7. 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은 매년 11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 및 홍보
2. 중견기업 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9.]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수행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 6. 2., 2017. 7. 26., 2019. 7. 9.>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

- 1의2.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
 - 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관한 업무
 - 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의 접수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의 실시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서류의 발급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 삭제 <2017. 12. 12.>

부칙 <제25495호, 2014.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로 한다.

④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2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⑦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⑧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각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부칙 〈제27467호, 2016. 8. 29.〉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94호, 2017. 6. 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3호,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
까지,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
로 한다.

제3조 전단 및 제1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항 중 “중
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28471호, 2017. 12. 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717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지주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당시 일반지주회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77호, 2019. 4.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1조의2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958호, 2019. 7. 9.>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제2조제4항제2호 관련)

[별표 2]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제2조제4항제2호가목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별표 1]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제2조제4항제2호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000억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700억원 이상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매출액 550억원 이상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400억원 이상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300억원 이상
41. 부동산업	L	
42. 임대업	N76	
43.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2]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제2조제4항제2호가목 관련)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 \sqrt[n]{A/B} - 1$$

A: 산정 대상 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B: 산정 대상 기간의 최초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n: 최종 사업연도에서 최초 사업연도를 뺀 기간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300	400	500

중견기업 확인요령

[시행 2019. 8.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40호, 2019. 8. 2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과), 044-203-4363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특례대상 중견기업”이란 법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7조의7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확인기관”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
4. “온라인 시스템”이란 중견기업 확인 신청 및 발급, 중견기업 지원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한 중견기업정보마당을 말한다.
5.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업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말한다.

제3조(중견기업 기준) ① 중견기업 여부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② 특례대상 중견기업 여부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중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5, 제9조의6, 제9조의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조(확인신청)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온라인 시스템의 신청방법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업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종료 여부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확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하나로민원)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감사보고서 등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 발급시기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의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 기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 ④ 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중견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확인서 발급) ① 확인기관 장은 중견기업 확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중견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특례대상 중견기업 확인 표시는 제3조의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한정한다.

제6조(유효기간) 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②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창업 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창업 등을 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중견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별지 제3호)을 신청할 수 있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3. 본사 이외의 기타 사업자번호를 추가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중견기업간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2014-42호, 2014. 7. 2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는 이 요령에 의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

② 이 요령 시행 전의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47호 「중견기업 확인요령」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6-4호, 2016. 1. 2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는 이 요령에 의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6-27호, 2016. 4. 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는 이 요령에 의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130호, 2017. 9. 1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는 이 요령에 의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118호, 2019. 7. 2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140호, 2019. 8. 2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8월 27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수수료: 없음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제출서류

- 직전 3개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1부(재무제표,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라 제출한 감사 보고서 등)
- 신청일 기준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법인에 한함, 첨부 1)
 ※ 단, 외국법인 자회사의 경우(첨부 2, 공증 必)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

1. 신청기업 정보

업체명(대표자명): _____ 법인등록번호: _____
 본사주소: _____ (연락처: _____ / FAX: _____)
 표준산업분류 코드 및 주업종명 _____
 용도 _____ 제출처 _____

2. 관계기업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 서명 및 날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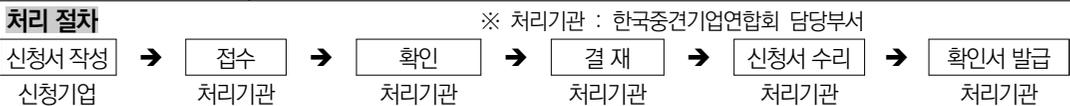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귀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 2]

외국법인 지분소유 및 자산현황

◇ 지분소유비율

① 지배기업명 :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 %)

주주명(법인)	주식수	지분소유비율	비고

* 주식 등 30%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또는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해당기업의 자료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지배기업명 : (신청일 기준, %)

주주명(법인)	주식수	지분소유비율	비고

* 중견기업 확인신청 당시 기준 해당기업의 지분소유구조가 1%이상 변경하였을 경우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 자산현황

	(ㄴ)금액	(ㄷ)통화	(ㄹ)단위	(ㄴ)해당 결산연월	비고
(ㄱ)자산총액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 중견기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既지원 받은 내용의 무효 및 취소, 회수 등 일체의 사후조치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 사 명
대표이사: 〇〇〇(인)

[별지 제2호 서식]

문서확인번호 : 0000-0000-0000-0000

〈발급번호 : 제0000-000호〉

중견기업 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유효기간 :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

1.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 해당 , 해당없음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해당 , 해당없음

* 특례대상 중견기업 기준 충족 시 표시

위 업체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등 관련법령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함

* 법인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정 및 발급됨

2019년 중견기업 범위해설

발 행 일 2019년 9월

발 행 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대표전화 1577-0900)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2팀
(대표전화 02-3275-2985)

인 쇄 경성문화사

2019년
중견기업 범위해설

